

보도시점 2024. 12. 4.(수) 9:00

## 한-베트남 기록관리 업무협약 체결, 동남아에 'K-기록관리 한류' 도약 기대

- 12월 4일(수),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서 한-베트남 기록관리 업무협약 체결
- 세계적으로 우수한 한국의 디지털 기록관리 기술과 경험을 베트남에 전수, 동남아 전역에 'K-기록관리 한류' 열풍 도약 기대

- 행정안전부(이상민 장관) 국가기록원은 12월 4일(수),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서 '대한민국 국가기록원과 베트남 국가기록원 간의 기록관리 분야 업무협약'을 체결한다고 밝혔다.
- 협약식에는 이용철 대한민국 국가기록원장과 당 탄 통(Dang Thanh Tung) 베트남 국가기록원장, 베트남 국가기록원 정책 담당자 등 양국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다.
- 그간 베트남 국가기록원은 '한-베트남 종이기록물 보존·복원 업무협약' 종료(2007년~2012년) 이후, 우리나라의 우수한 디지털 기록관리 기술을 전수받고자 국가기록원에 업무협약을 요청해 왔다.
- 특히, 대한민국의 공공기록물 디지털 전환과 국가기록원의 신속한 기록관리체계 구축·적용에 많은 관심이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대한민국 국가기록원의 '국제 기록관리 교육연수 과정'에 수 차례 참여한 바 있다.
- 이번 업무협약은 베트남 정부의 요청사항을 반영해 최신 트렌드 디지털 기록관리체계와 기술 교류 중심으로 ▲양국 간 주요 기록물 정보 공유, ▲기록관리 전문가 교류, ▲출판·연구·교육·전시 등 신규 협력사업 발굴·추진 등이 주요 내용이다.
- 국가기록원은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 중 하나인 베트남과 업무협약 체결로 동남아 지역에 기록물의 디지털화, 공공서비스의 대국민 서비스 등 대한민국의 우수한 기록관리체계와 기술 및 경험을 전파, 확산할 수 있게 됐다.

- 이용철 국가기록원장은 “대한민국 기록관리체계 및 기술의 우수성은 이미 북미, 유럽 등 기록관리 주요국가 사이에서도 인정받고 있으며, 많은 국가들의 기술전수 요청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”면서,
- “베트남과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동남아시아 전역에도 ‘K-기록관리 한류’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국가기록원	책임자	과 장	서왕장 (042-481-6247)
	기록협력과	담당자	연구관	김성겸 (042-481-6311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
**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**



대한민국 국가기록원과 베트남 국가기록원은(이하 “양측”이라고 한다)

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양국 간의 전통적 우애와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기록관리 분야에서 상호협력 증진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.

### 제1조

본 업무협정의 목적은 양측이 호혜 평등과 상호 존중의 원칙에 기반하여 기록물 관리와 관련된 양 기관의 경험과 지식,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.

### 제2조

양측은 자국 국내법의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국의 역사와 관련된 기록물의 사본 및 출판물을 교환한다.

### 제3조

양측은 디지털 기록관리, 기록물 보존·복원 등 기록관리와 관련된 전문가 인적교류를 위해 협력한다.

### 제4조

양측은 양 기관의 기록물 이용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면서 상대국 연구자의 기록조사와 연구 활동을 지원한다.

### 제5조

양측은 상호 합의한 주제에 대하여 공동으로 출판, 연구, 전시, 교육 프로그램, 학술 세미나 등 협력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한다.

### 제6조

양측은 세계기록관리협의회(ICA)와 같은 기록관리 분야 국제기구에서 양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.

## 제7조

양측은 양 기관의 우선순위에 따라 새로운 협력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.

## 제8조

1. 본 업무협약은 양측에 어떠한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.
2. 본 업무협약은 양국의 국내법 하에서 이행되며, 양측의 가용 범위 내의 인력과 재정을 그 조건으로 한다.

## 제9조

1. 본 업무협약에 따라 취득한 정보 또는 기록은 그것을 제공한 측의 서면 동의 없이는 그것이 요청되거나 승인된 목적 외로는 사용할 수 없다.
2. 본 업무협약에 따라 취득한 정보 또는 기록은 그것을 제공한 측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.

## 제10조

1. 본 업무협약은 양측의 서명으로 효력이 발생하며, 그 효력은 5년간 유효하다. 이 업무협정은 종료 의사가 있는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최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협정 종료를 통보하지 않는 한, 그 효력이 자동으로 5년간 연장된다.
2. 양측은 6개월 전에 서면 통지함으로써 언제든지 이 업무협약을 종료할 수 있다.
3. 본 업무협약의 종료 및 만료는 양측이 공동으로 결정하지 않는 한, 업무협약에 따라 진행 중인 어떠한 프로젝트나 협력 사업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

본 업무협약은 2024년 12월 4일 대한민국 국가기록원 성남 나라기록관에서 서명하였으며,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, 베트남어,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.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.